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 세 영

I. 회의 개요

1. 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은 2018년 12월 제54차 회의부터 소규모 기업의 도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논의는 기존의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2004)」을 토대로 이와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별도로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이도산절차에 관한 입법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입법지침의 성안을 위해 총 5차례의 공식 작업반 회의 및 다수의 비공식협약이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제58차 작업반 회의는 2021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싱가포르의 Herald Foo 의장 주재 하에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2. 회의 결과 요지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는 입법지침의 공식 명칭으로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57차 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잔여 쟁점에 대한 검토를 마침으로써 입법지침¹⁾ 중 ‘권고(Recommendation)’ 부분의 문안을 우선 확정하였고, 이를 금년 6월에 열릴 제54차 UNCITRAL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주석(Commentary)의 경우, 이번 회의에

1) 이 입법지침은 크게 정의조항(Glossary), 권고(Recommendation) 및 주석(Commentary)으로 구성된다.

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초안을 권고(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여 원칙적인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은 후, 다음 회의(제59차, 2021년 12월 12~17일 예정)에서 성안을 완료하고 2022년 제5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II. 주요 논의사항

1. 권고안 18(의제 승인)

권고안 18은 간이도산절차 상 채권자들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통지를 받은 채권자들이 ‘이의(objection)’를 제기하지 않거나 ‘충분한 반대(sufficient opposition)’를 하지 않는 때, 그 사항은 채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의제승인제도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²⁾

의제승인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우선 소규모 기업의 도산은 통상의 도산절차와 달리 채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간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현재의 입법지침(안)은

개별 통지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채권자 보호와 절차의 신속성·효율성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의제승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주석에서도 이 권고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더 충분히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작업반은 이를 참고하여 다음 회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 권고안 34(간이도산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한 절차 적용 배제)

당초의 권고안 34는 간이도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하여 - 그해당 절차에 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의 채권이 간이도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면책 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도록 하였다.³⁾

지난 회의에서는 ① 이 권고를 삭제하자는 의견, ② 현재 문안을 유지하되 주석에서 그 적용 범위 및 남용 방지 장치 등에 대해 설명하자는 의견 및 ③ 의무조항(should)이 아닌 선택조항(may)으로 변경하

2) 이번 제58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확정된 기존 문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3) 논의 전후 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문안 삭제 및 수정 의견은 현재의 권고안이 자칫 채권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논의 결과, 간이도산제도에 관한 도산법은 도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중립적인 표현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표제 또한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각주3 참조).

또한, 이와 별개로 적법절차(duel process)의 측면에서 위 통지 누락의 효과와 남용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주석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였다.⁴⁾

3. 권고안 72(회생계획의 내용)

당초의 권고안은 간이도산절차에 관한 도산법이 회생계획의 조건, 채권자 목록 및 개별 채권자에 대한 조치, 회생계획 이행 방식 등 일정한 내용을 회생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산 목록(list of assets)”을 그 필수 사항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국가들은 이 자산 목록이 담보권에 종속되는 자산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입장은 특히 해당 목록이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보려는 채권자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권한당국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⁵⁾

논의 전	채택
<p>[No effect of the commenced proceeding on un-notified creditors</p> <p>34.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could] specify that claims of creditors not notified of the commencement of the simplified insolvency proceeding and having not joined the proceeding are unaffected by the simplified insolvency proceeding and excluded from any discharge that may result from that proceeding.]</p>	<p>Possible consequences on claims of creditors not notified of the commencement of the simplified insolvency proceeding</p> <p>34.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consequences on claims of creditors no notified of the commencement of the simplified insolvency proceeding.</p>

4)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작업반 회의에서 권고안 34와 같이 미통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권리 변경(회생절차의 경우) 및 면책(파산절차의 경우)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및 현행 법령과 비교할 때 - 미통지 채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로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표명하였다. 또한 해당 권고를 입법에 반영할 경우 국가별 도산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그 요건의 규정이 쉽지 않고, 채무자 및 채권자가 이를 남용할 위험성도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문안은 이러한 우려들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취해온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가치(value of assets)”도 해당 권고안에서 다룰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자산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복잡한 이슈들이 존재하여 포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의 기초(계속기업의 가치 또는 청산 가치 등), 평가 비용, 평가 수행 및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 및 특정 자산의 가치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존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이 이러한 평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간이도산절차 상의 자산 가치 평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절차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와 별개로 자금의 흐름, 핵심/비핵심 자산, 도산 전 송금 및 중요 정보 비공개에 대한 제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자산의 가치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었으며, 담보권에 종속되는 것을 비롯한 채무자의 자산 목록 및 (청산의 경우와 달리)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필수 사항에 추가하는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4. 권고안 74(통지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의 구속력)

이 권고는 회생계획에 대하여 반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 회생계획에 구속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 이는 지난 회의 시, 우리측 제안을 반영하여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과 정합성을 갖는 수정 문안이 채택된 결과이다.

그러나 관련 주석(271 및 272)은 이 권고의 취지 및 ‘반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여, 다음 회의에서 해당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5. 권고안 75(다툼이 없는 회생계획)

당초의 권고안은 권한 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이의(objection)나 충분한 반대(sufficient opposition)를 접수한 바 없다면, 그 계획은 채무

5) 이와 유사한 취지에 기초한 문안 수정은 청산 일정의 최소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권고안 58에서도 이루어졌다.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Effect of the plan on unnotified creditors

74.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that a creditor whose right are modified or affected by the plan should not be bound by the terms of the plan unless that creditor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express opposition on the approval of the plan.

자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승인제도를 각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is deemed to be”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이도산절차 상 채권자의 의제승인제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고안 18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⁷⁾

그 결과, 해당 권고는 권고 18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생계획안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안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지분권자(equity holder)의 승인 간주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앞서 논의된 권고안 18 및 권고안 75에 대한 공통 지적 사항은 채권자의 침묵(silence)을 항상 긍정이나 동의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는 통상적으로 간이도산절차 전반에서 중

요하게 형량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인데, 의제승인제도는 자칫 이를 취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제 승인이 반드시 일반적인 투표 절차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 권고안 83(간이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

이 권고에 따르면 권한 당국은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결여하였고 회생 가능성 또한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자신의 결정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독립 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의 신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중지 및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독립 전문가의

7) 논의 전후 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 전	채택
<p>Undisputed reorganization plan 75.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that the plan is [deemed to be] approved by creditors <u>if the competent authority receives no objection and no sufficient opposition to the proposed plan within the established time period.</u></p>	<p>Undisputed reorganization plan 75.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that the plan is deemed to be approved by creditors <u>if the requirements under recommendation [18] are fulfilled.</u></p>

참여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의 전환이 회생계획 제출 기한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성 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종 채택된 내용에 따르면, 권한 당국이 회생계획 제출 전에 절차의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경우, 권한 당국은 회생계획의 준비 및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전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독립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도록 도산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7. 권고안 84(면책 결정)

당초의 권고안은 배당 종료 후 또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권한 당국의 결정에 의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면책 결정 시기에 관하여 이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표명

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권고 84에서는 신속히 면책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면책 결정의 시기를 제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⁸⁾ 이와 관련하여 주석에서도 배당 완료 전의 면책이 가능함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8. 권고안 86(채무변제계획의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면책)

권고안 86의 위치를 현재와 같이 “간이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부분에 둘 것인지, 아니면 “간이회생절차에서의 면책” 부분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 권고안이 파산절차보다는 개인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간이회생절차에서의 면책에 관한 권고안 91 다음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8) 논의 전후 문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 전	채택
88.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that, in a simplified liquidation proceeding, discharge <u>[should take effect upon dec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llowing the distribution of proceeds or the determination that no distribution can be made.]</u>	84.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should specify that, in a simplified liquidation proceeding, discharge should <u>be granted expeditiously.</u>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도 권고안과 같이 채무변제계획이 적용되는 입법례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반대함에 따라 권고안 86은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9. 권고 87(간이회생절차에서의 면책)

당초의 권고안은 간이회생절차에서의 완전한 면책은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조건으로 하며 그 수행에 대한 권한 당국의 확인이 이루어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should”)고 서술하였다.

이에 대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 특히,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보다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조건으로 완전한 면책을 고려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좀 더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should” 대신 “may”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한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등) 결국 “may”가 최종 채택되었다.⁹⁾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scharge in simplified reorganization proceedings

87. [91] The insolvency law providing for a simplified insolvency regime may specify that full discharge in simplified reorganization is conditional up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it shall take immediate effect upon confirm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such implementation.

10) Option 1 및 option 2은 개별 국가들의 참고를 위해 주석(commentary)에서 언급하기로 정리하였다.

11) 해당 권고안이 위치한 R. 부분과 관련하여 “도산 전” 또는 “도산 예방”조치 중 어떤 표제명을 채택할지에

10. 수정 전 권고안 87(일부 면책)

수정 전 권고안 87은 다툼이 없는 일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면책 결정을 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의 면책은 별도 절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면책은 많은 국가들에 생소한 제도이며 이 제도의 도입은 간이도산절차 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 국가들이 해당 권고의 삭제(option 3)를 주장하였다.¹⁰⁾

결국 이 권고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1. 권고안 102(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¹¹⁾

권고안 102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을 지배하는 자는 채무자의 도산이 임박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

고, 재정적 곤란의 초기 단계에서 도산을 피하거나 그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도산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 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적용 대상 범위에 관하여는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수 국가들은 본 권고가 필요하며 특히 ‘채무자의 사업을 지배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대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위 내용이 개별적인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반면에 통합된 소규모 기업들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들의 책임을 결정하는 절차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권고는 불필요하며 삭제도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였다.

12. 권고안 105(비공식 채무조정 협의 참여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본 권고안은 비공식 채무조정 협의 참여에 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채무자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 특히 근로자(and other rele-

vant stakeholders, in particular employees)” 들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였다.

해당 문구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권고안의 핵심은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혜택 부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간 이도산절차 상 근로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아래 13. 참조) 해당 문구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논의 결과, 이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may consider”) 근로자를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 포함하되 제도 채택 및 구체적인 운용은 개별 국가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13. 근로자 권리 보호 규정 신설에 관한 논의

가. 논의 배경

EU 대표는 지난 제57차 작업반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입법지침에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EU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EU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법령(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전자를 지지하는 의견(우리나라, 영국 등)이 우세하여 최종적으로 “R. Pre-commencement aspects”라는 표제가 채택되었다.

종 법적 요건 등)과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정안은 이번 제 58차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에 반영되었다.

나. 주요 내용

(1) 권고안 1(간이도산제도의 주요 목적)

권고 1의 (d)는 간이도산절차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parties in interest)”의 보호를 간이도산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근로자”도 새로이 포함하였다.

근로자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용자인 소규모 기업의 도산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적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에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권고 조항의 (e)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도 근로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g)는 도산절차가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g bis)

에서도 희생이 가능할 경우 고용과 투자를 보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2) 권고안 6(권한 당국의 감독 기능 관련)

사무국은 지난 회기 EU의 제안을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적용 법률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권한 당국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권고안 6 (i)의 문안을 정리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권고안 20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법률(applicable law)”을 “도산법 및 도산절차 상 적용되는 다른 법률(insolvency law and other laws applicable within insolvency proceedings)”로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3) 권고안 19(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및 의무)

권고안 19는 간이도산절차 상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4) 권고안 20(간이도산절차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당초의 권고안은 “J. 근로자(Employees)”

라는 신설 항목 아래에 본 권고안을 두고, 도산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권한 당국은 도산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된 ‘적용 법률’의 모든 요건이 간이도산절차에서도 준수되도록 하여야 함
- 위 적용법률 상의 요건들은 소규모기업의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이도산절차의 개시 및 그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고용 상태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점을 포함할 수 있음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위 내용 중 근로자에 대한 채무자의 정확하고 완결성 있는 정보 제공 의무가 강조되었다.

논의 결과, 해당 권고안의 위치를 기존의 “E. 참가자(Participants)” 항목으로 이동하고 “간이도산절차에서의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라는 표제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적용 법률(applicable law)”이라는 표현은 “도산법 및 도산절차 상 적용되는 다른 법률(insolvency law and other laws applicable within insolvency proceedings)”로 수정하여 그 의미 및 범위를 명확히 하

였다.

(5) 권고안 22(간이도산절차 개시 기준 및 절차)

권고안 22 (c)는 간이도산제도에 채권자 및 채무자를 절차 개시 신청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권고는 그 보호 대상에 채권자 및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을 추가하였다.

다. 소결

간이도산절차 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EU의 제안에 대하여 해당 내용은 도산법이 아니라 노동법에서 규정할 내용이라는 이견 및 각 국가의 국내법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권고안의 경우,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의 형태를 채택하였으며, 관련 주석에서 본 입법지침이 각 국가의 국내법 상 이미 존재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입법지침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적정 수준은 결국 각 국가가 국내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가급적 개별 국가의 입법 권한 및 재량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논의 과정에서 EU 측 제안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고 구체적인 표현 및 위치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채택되었다.

IV. 평가 및 소감

이번 제58차 실무회의에서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 중 권고(Recommendation) 부분이 성안되었다. 총 107개의 권고 문안이 확정되었으며 최종 승인을 위해 6월말경 개최될 제54차 UNCITRAL 본회의 제출을 앞두고 있다.

소규모기업을 위한 간이도산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현 시점에서 더욱 시의성을 갖는 주제이다. 많은 국가들과 주요 국제기구가 다양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산, 특히 중소기업 도산의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 및 회생절차에 대한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작업반의 논의 결과물은 각 국가들에게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²⁾

또한 이번 입법지침(안) 논의는 단순히 도산절차법 뿐만 아니라 도산실체법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간이도산절차의 확립과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두 가치 간의 형량은 권고안에 대한 논의 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작업반의 논의는 두 가치 간의 균형을 살리되, 각 국가의 입법 재량을 가급적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권고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으나, 신고 또는 통지되지 않은 채권자의 도산절차 상 권리와 의무, 근로자 보호 규정 및 의제승인제도 등 우리 법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채택될 문서는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없는 ‘입법지침’이기는 하나, 최종 승인될 경우에는 향후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 및 제도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용의 실익 및 우리 법제와의

12) 실제 작업반 회의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간이도산제도에 대한 입법지침이 자국 법제 개선에 필요한 자료라고 밝힌 국가들이 다수 있었다.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석(Commentary)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기인 제59차 작업반 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인바, 권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